

#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

제 정 2019. 11. 21. 규칙 제1500호

개 정 2022. 1. 20. 규칙 제1596호

개 정 2022. 5. 4. 규칙 제16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겸직 여부에 따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만65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4.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4조(강사의 종류와 제한)** ①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강사의 종류는 일반강사, 신진강사로 구분한다.

② 일반강사는 신규 임용절차에 의해 채용되는 강사를 말한다.

③ 신진강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채용되는 강사를 말한다.

1. 강의경험 누적 36학점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3.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

**제5조(채용구분)** ① 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삭제 2022.1.20.>

② 삭제 <삭제 2022.1.20.>

**제6조(특별채용)** 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0.>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6개월 이하의 연구년
3. 직위해제·퇴직·면직
4. 출제위원으로 파견 또는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과(전공)에서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대학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제7조(임용계획)** ① 총장은 학기 단위로 강사 임용 분야, 인원, 담당시수 등 공개 채용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강사 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임용공고)** ① 강사의 임용 공고는 임용분야, 담당교과목, 담당시수,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예

산 등을 고려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구비서류제출)** ① 신규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대체자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5호를 제외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강사 임용 지원서 1부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강의경력증명서 1부
4. 수업계획서(우리 대학 소정양식) 1부
5. 최종 학위 논문 1부
6.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 목록 1부 및 300%이내의 연구실적물 각 1부
7. 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0조(강사공정관리위원회)** ① 강사 공개채용 과정에 중대한 문제 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강사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교육대학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는 교무처장이 교육대학원은 교육대학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강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2. 기타 강사 공개채용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조정안을 학과(전공)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권은 총장이 가진다. <일부 개정 2022.1.20.>

**제11조(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제척·회피 등) ① 학과(전공)에서 강**

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심사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임용분야 전공자’나 ‘관련 계열 전문가’중에서 3명 이상으로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단, 연구년, 휴직, 수능출제위원,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구성이 어려울 경우 3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 중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에 대하여 제척·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 심사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당해 학기 강사 임용 계획 수립 시 구성되며, 채용업무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서류접수)** ① 공개 임용할 때에는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등을 통해 [별표 1]의 ‘강사 임용 지원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는다. 단, 온라인 접수 시에는 ‘강사 임용 지원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접수한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단계)** ①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이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초심사 ·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임용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1. 기초심사 : 지원 자격과 임용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가. 자격심사 : 자격 및 공고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
  - 나. 전공적부심사 : 최종 학위 논문(학위증명서)과 임용분야 일치 여부 심사
2. 전공심사 : 연구의 학문적 우수성 및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능력 등
  - 가. 연구실적 : 최근 5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논문 · 저서 · 역서 · 공연실적 등) 300%이내
  - 나. 교육능력 : 강의경력, 수업계획서, 공개강의 등
3. 면접심사 :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및 인성 등

**제14조(기초심사)** ① 기초심사는 [별표 3]과 같이 자격심사와 전공적부심사로 구성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자격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채용공고에 의한 자격여부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단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③ 전공적부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최종학위 논문이 임용분야와 전공분야와의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A(매우적합), B(적합), C(부적합)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B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로 결정한다. 단, 학위논문대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전공심사)** ① 기초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는 전공분야의 제출실적, 학문적 우수성 등을 고려한다.

③ 교육능력심사는 응시자의 강의경력, 수업계획서의 잠재적 역량, 공개강의 등을 고려한다. 단, 공개강의 실시 여부는 학과(전공)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④ 전공심사는 [별표 4]와 같이 각각 25점 만점으로 하되, 총점은 50점 만점으로 한다. 매우우수(25점 이상), 우수(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매우미흡(5점)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단, 학위논문대체를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심사를 제외한 교육능력심사만 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학과(전공)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 개정 2022.1.20.>

**제16조(면접심사)** ① 전공심사를 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및 인성을 고려한다.

③ 면접심사는 [별표 5]와 같이 50점 만점으로 하되, 매우우수(50점), 우수(40점), 보통(30점), 미흡(20점), 매우미흡(10점)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각 심사단계별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단, 점수 비율은 학과(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제17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6]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후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별표 7]에 따라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총장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임용후보자가 3명이하일 경우 전원 추천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각 과정별 심사의 평점은 심사위원 개인별 평점을 합산 평균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점합계가 동일한 경우는 전공심사, 기초심사, 면접심사의 평점 순으로 신규임용 후보자로 결정한다.

**제18조(임용예정자 선정)** ① 총장은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자 중 최고득점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심의·의결(서면결의포함)을 거쳐 최종 임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총장은 학과(전공)별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임용예정자가 되었음을 통보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④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1.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를 순위대로 임용
2.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 부여

**제19조(결격사유 조회)** 총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한 학력·경력, 신원, 성범죄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고 확인한다.

**제20조(임용일)** 강사의 임용은 학기 개시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1조(임용계약)** ①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일부 개정 2022.1.20.>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21조의2(소속)** 강사는 강의를 개설한 학과(전공)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학과(전공)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주당 시수가 많은 학과(전공)에 소속을 둔다. <신설 2022.1.20.>

**제22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23조(임금)** ① 강사에게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시간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② 강사의 임금은 학기 단위로 산정하고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단, 계절학기·팀티칭·교육대학원 강의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임금은 주단위 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방학 중 임금은 학기 전 1주분과 학기 후 1주분 총 2주분으로 연간 4주분을 지급한다.

④ 시간당 강의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임용 계약기간 중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1개 학기만 임금을 지급한다.

⑥ 강사의 임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주교육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교수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은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주당 강의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당 6시간 이하 담당 : 1일
2. 주당 7시간 이상 담당 : 2일

**제25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교육관계 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본교에 임용된 이후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거나 겸임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④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⑤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⑥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해당 교과목 폐강 등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강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재임용절차)** ① 총장은 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는 재임용심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의 재임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해당 학과(전공)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만료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지정된

기간 내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③ 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별표 11]의 재임용 평가표를 작성하며, [별표 13]에 따라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제27조(재임용심사)** ①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수업계획서 및 성적입력, 강의실적, 수업평가, 교원법정의무교육이수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에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② 심사위원은 심사항목별로 P(적격) 또는 F(부적격)로 평가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③ 심사항목별로 위원 모두가 P(적격)로 평가한 경우에만 재임용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④ 수업계획서 및 성적입력에 대한 심사는 강사가 담당하는 각각의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입력한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P(적격)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⑤ 강의실적에 대한 심사는 수업계획서, 수업자료, 휴·보강 준수 등 강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경우 P(적격)로, 부적절한 경우 F(부적격)로 평가한다.

⑥ 수업평가에 대한 심사는 담당하는 교과목이 각각 5.0만점 중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업평가 응답률이 50%미만이거나 소규모 강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교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P(적격)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P(적격)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개정 2022.1.20.>

**제28조(재임용 확정)** ① 총장은 재임용 심사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서면결의포함)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강사를 재임용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표 12]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③ 학과(전공)는 강사의 신분 안정을 위하여 강의 배정 등 노력을 해야 한다. <일부 개정 2022.1.20.>

**제29조(재임용 탈락자의 불복 절차)** ① 재임용 심사에 탈락된 강사가 불복할 경우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강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면직처리 한다.

**제30조(신규임용 및 재임용의 조건과 예외사항)** ①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 보장 기간은 합산하여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일부 개정 2022.5.4.>

②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의 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한다.

1. 소속된 각 학과(전공) 등이 폐지되는 경우 <일부 개정 2022.1.20.>
2. 다음 학기 담당 교과목 강의(전공일치과목)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
3.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 강의를 개설되지 않는 경우
4. 신청 수강생 미달로 해당 교과목 강의를 개설되지 않는 경우
5.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전임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 전임교원 강의시수 부족으로 강사의 담당 시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7. 전임교원 연구년(6개월 이상), 휴직(6개월 이상)자 대체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
8.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긴급히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부 개정 2022.1.20.>

**제31조(당연퇴직 및 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3. 임용기간 중 만65세에 달하는 경우(이 경우 만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②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강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1. 형의 선고

2.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3. 학과(전공)의 개폐에 의한 경우 <일부 개정 2022.1.20.>

③ 강사 본인의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자동 면직으로 처리한다.

**제3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규정 제1500호, 2019.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청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위촉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위촉된 시간강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위촉한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면직된다.

#### **부 칙**(규정 제1596호, 2022.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규정 제1605호, 2022.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강사 임용 지원서

학과(전공)		교과목	접수번호
--------	--	-----	------

###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출생월일	0000.00.00.
현주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이메일	

### 2. 주요학력사항

학교명 및 전공	수학기간	학위	졸업여부
	. . ~ . .		<input type="checkbox"/> 과정 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 . ~ . .		<input type="checkbox"/> 과정 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 . ~ . .		<input type="checkbox"/> 과정 중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졸업

### 3.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4. 주요교육연구경력

기간	소속기관명	직위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요연구실적(최근 5년간)

제목	학술지/출판사	게재확정일자	저자수	참여형태

※ 연구실적: 논문·저서·역서·공연실적 등

첨부: 교육·연구경력·연구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별표 2]

## 강사 공채 전형기준

전형 단계	구 분	위 원	배 점	전 형 기 준						비 고			
기초	자 격 심 사	강사임용 심사위원	합 격 불합격	공 통	*학력 : 채용공고 기준 충족여부								
					*경력 :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연구실적연수 또는 교육경력연수의 자격기준								
심사	전 공 적 부 심 사	강사임용 심사위원	P/F	최종 학위 논문(학위증명서)과 임용분야와의 일치정도									
				구 분	등 급	A (매우적합)	B (적합)	C (부적합)	*심사위원 과반수가 B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				
				최종 학위논문(학위증명서)과 임용분야 일치도									
전공	연 구 실 적 심 사	강사임용 심사위원	50점	최근 5년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질을 고려하여 심사(300%이내)						합산평균 점수가 "미흡"이하 인자 탈락			
				공 통	단 위	등 급	300%~200% (5점)		200%이하 (2점)				
					제출실적(5점)								
					단 위	등 급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미흡 (1점)	
					연구실적물의 질 (20점)								
				논문(예제능계의 경우 발표작품 포함)이 중복된 경우나 유사논문으로 판단될 경우 "0"점을 줄 수 있다.									
심사	교 육 능 력 심 사	강사임용 심사위원	50점	수업계획서, 공개강의 등 잠재적 역량									
				공 통	단 위	등 급	매우우수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5점)	
					수업계획서의 질 (25점)								
					* "공개강의" 의 심사방법, 점수는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공개강의를 실시할 경우 배점 25점 중 최대 15점까지 공개강의 부분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면접	면접 심사	강사임용 심사위원	50점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인성 등 종합적 고려									
				공 통	심 사 요 소	심 사 결 과							
						매우우수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5점)		
					교육자로서의 전문성(25점)								
교육자로서의 인성(25점)													

[별표 3]

## 강사 공개채용 심사표(기초심사)

접수번호		학과(전공)		교과목		성명	
------	--	--------	--	-----	--	----	--

구 분	심 사 내 용				특 점 (P/F)	
자 격 심 사	학 력	※ 채용공고 기준 충족여부				
	경 력	※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연구실적연수 또는 교육경력연수의 자격기준 - 대학졸업·동등자격자 : 2년 이상 - 전문대학졸업·동등자격자 : 3년 이상				
전 공 적 부 심 사	등 급		A	B	C	
	구 분	최종 학위논문(학위증명서)과 임용분야 일치도	매우적합	적합	부적합	

(비고)
------

※ 심사위원 과반수가 “B”이상으로 평가하면 “P(적격)”,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4]

## 강사 공개채용 심사표(전공심사)

접수번호		학과(전공)		교과목		성명	
------	--	--------	--	-----	--	----	--

구분	심사내용						특점	
	등급 단위	300%~200% (5점)			200%이하 (2점)			
연구 실적 심사	제출실적(5점)							X
	등급 단위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매우미흡 (1점)		
	연구실적물의 질(20점)							
교육 능력 심사	등급 단위	매우우수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5점)	X	
	수업계획의 질(25점)							
합 계(50점)								

(비고)

- ※ 연구실적 및 수업계획의 질을 고려하여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 학위논문대체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교육능력심사만 진행하되, 점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가는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급적 심사요지를 상술하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5]

## 강사 공개채용 심사표(면접 심사)

접수번호		학과(전공)		교과목		성명	
------	--	--------	--	-----	--	----	--

구 분	심 사 내 용						득 점
	단위	등급	매우우수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면접 심사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25점)						
	교육자로서의 인성 (25점)						
합 계(50점)							

(비고)

※ 평가는 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표 6]

## 강사 신규채용 총괄표

접수번호		학과(전공)		교과목		성명	
------	--	--------	--	-----	--	----	--

기초심사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P/F)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1. 자격기준(연구·교육경력·연령 등)은 충족하는가?						
2. 전공분야와 임용분야와 일치하는가?						

※ A(매우적합), B(적합), C(부적합)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B이상 "P(적격)", 그렇지 않으면 "F(부적격)"

전공심사 면접심사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 ( )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평균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1. 연구실적물의 학문적 우수성 등 (제출실적, 실적물의 질)						
2. 수업계획서의 잠재적 역량 공개강의 등						

※ "매우우수" : 41점~50점, "우수" : 31점~40점, "보통" : 21점~30점, "미흡" : 11점~20점, "매우미흡" : 0점~10점

면접심사

심사내용	심사결과					평가결과 (평균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1.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2. 교육자로서의 인성						

※ "매우우수" : 41점~50점, "우수" : 31점~40점, "보통" : 21점~30점, "미흡" : 11점~20점, "매우미흡" : 0점~10점

0000 년 00월 00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8]

## 강사 임용 계약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2. 담당과목별 주당 담당시간

강의개설 학과(전공)	담당과목	주당 강의시간		비고
		'00. 0학기	'00. 0학기	

※ 학기별 시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금, 방학중임금 등) “갑”은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00조(급여 등)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구성항목 :
2. 지급방법 : 학기 단위로 산정하되, 매주 4주 단위 또는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본조 제2조제1호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본조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간을 담당한다. 다만, 정해진 강의 일자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을”은 별도로 보강을 실시한다.

② “을”에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00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에 따른다.

제4조(면직) “을”은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00조(당연퇴직 및 면직)에 따른다.

제5조(재임용 절차) “을”은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00조(재임용절차)에 의거 재임용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00조(신규임용 및 재임용의 조건과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 조건)

1. “을”은 본 대학교 제 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의 「강사 임용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년 00월 00일

(갑)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인]

(을) 계약당사자 성명 [인]

주소 :

[별표 9]

## 강사 재임용 신청서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00.0학기	'00.0학기			
					0000.00.00 ~ 0000.00.00

- 수업계획서 및 성적 입력 실적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와 성적 입력을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입력한 사실
  - 수업계획서와 성적 입력을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 등(선택사항)
- 강의실적(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 활용자료 리스트 등
  -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등
  - 그 밖에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 등
- 수업평가 실적(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 위의 수업 평가 결과가 3.00점 미만인 경우 소명자료(선택사항)
- 교원법정의무 교육(원격 등 강의 후 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폭력예방교육
  - 기타 교원법정의무 교육 등
- 각 학과(전공)에서 계약시 추가한 평가항목에 관한 실적(대상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서 제출)
  -

0000 년 00 월 00 일

소 속 :

성 명 :

인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강사 재임용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심사방법
수업계획서 및 강의 입력	1. 담당 교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 교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적 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3. (필요시) 소명자료	P/F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강의실적	1.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우수성 2.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 자료 활용 등 3.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4.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P/F	<위원 중 1명 이상이 적격으로 평가하면 P, 모두 부적격인 경우 F>
수업 평가	1. 담당 교과목별 수업 평가 결과 2. (필요시) 소명자료	P/F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교원법정의무 교육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3. 폭력예방교육 4. 기타 교원법정의무 교육 등	P/F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P(적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부적격)으로 평가
학과(전공) 평가요건	1. 각 학과(전공)에서 계약시 추가로 정한 사항	P/F	<위원 모두가 적격인 경우만 P, 그렇지 않은 경우 F>

[별표 11]

## 강사 재임용 평가표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00.0학기	'00.0학기			
					0000.00.00. ~ 0000.00.00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수업계획서 및 성적입력	1. 담당과목별로 수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2. 담당과목별로 각 학생의 성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	
강의실적	1. 담당과목별 수업계획서 우수성 2. 담당과목별 교수법, 매뉴얼, 관련 자료 활용 등 3. 휴강내역 및 사유, 보강 내역 4. 강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수업평가	1. 담당과목별 수업평가 결과	
교원법정의무 교육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여부 3.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 4. 기타 교원법정의무 교육 등	
학과(전공)의 평가요건	1. 각 학과(전공)에서 계약시 추가로 정한 요건	

본인은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 소 속 : \_\_\_\_\_ 인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12]

## 강사 재임용 거부서

소속	담당과목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00.0학기	'00.0학기			
					0000.00.00. ~ 0000.00.00

재임용 거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귀하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별표 13]

##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

심사대상자		재임용 신청여부	평가결과		재임용 거부 사유
성명	생년월일		재임용 대상	재임용 거부	
합 계		명	명	명	

- ※ 재임용 신청여부 :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면 “○”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로 기재
- ※ 재임용 대상 : 재임용 평가결과 충족한 경우로 “적격”으로 기재
- ※ 재임용 거부 : 재임용 평가결과 미충족한 경우로 “부적격”으로 기재
- ※ 재임용 거부 사유 : 거부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 붙임 1. 각 강사별 재임용 평가표 ( 건)
- 2. 재임용 거부대상자별 재임용 거부서 ( 건)

0000 년 00 월 00 일

심사위원장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